

2021년 경영이양직불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2021.3.1. 시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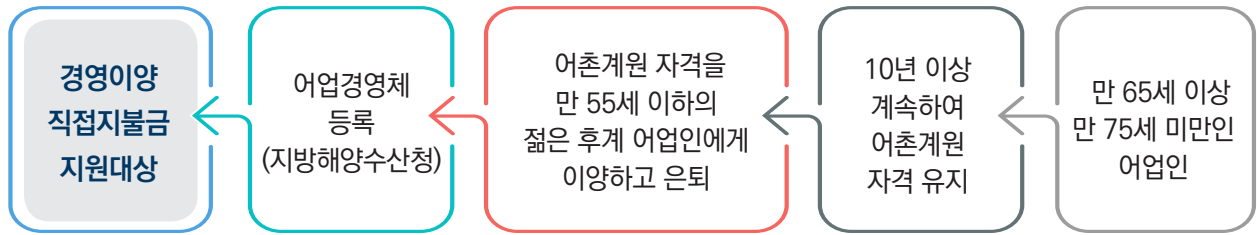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신청제외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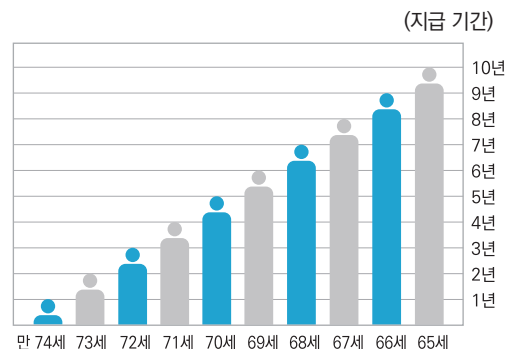
- 200만원 미만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방법 및 지급 기간은?

지자체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방법** : 좌측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 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질문과 답변



Q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가 약정기간 중이나 약정이 완료된 후 해당 어촌계나 다른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 어촌계 재가입 불가

Q 어촌계 결산소득이 없거나 결산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A 어촌계 결산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어촌계의 계원은 신청이 어려움

Q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어촌계에서 경영이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 어촌계 가입이 거절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경영이양을 받으려는 자가 어촌계 가입이 거절된 경우 지급 불가

Q 경영이양을 받은 사람이 해당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직불금을 계속 수령이 가능한지?

A 경영이양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급이 가능함.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정을 해제하고 환수 조치

Q 경영이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A 경영이양을 받으려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Q 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과 다른 수산직불금을 동시에 수령이 가능한지?

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 지급 불가

Q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A 경영이양 직불금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 불가

Q 경영이양 약정을 체결한 경우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지?

A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 가능

Q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 하는지?

A 관할 지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문의하여 등록

Q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조기에 지급받기 위한 사전신청은 가능한지?

A 사업자 선정(60일) 및 약정 체결(30일) 일정 등을 감안하여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사전준비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을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가입되어 있는 어촌계와 협의)



신청서 접수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읍·면·동에 제출(연중)

- (구비서류)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서류 사본 등
- 해당 지자체 경영이양직불금 사업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

읍·면·동(30일)

-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적격 여부 확인 후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검토 결과 제출

특별자치도지사 등(20일)

- 지급요건 적합성 검토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읍·면·동장에게 통보

읍·면·동(10일)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자격 이양(30일)

지급대상자는 어촌계를 탈퇴하고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

경영이양 완료 시



약정 체결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지급대상자 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 체결



직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계약 체결 다음 달부터 약정 체결 기간까지 매월 직불금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관련 문의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54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24
경기도	해양수산물과	031-8008-4549	경상북도	해양수산물과	054-880-7721
강원도	수산정책과	033-660-8333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14
충청북도	축수산물과	043-220-3743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3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45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물과	052-229-299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